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	4), 5)	0	0
ı	접형)			
2	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0	0
3	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0	0
4	미래에셋 KRX3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	4), 5), 6)	0	0
5	미래에셋개인솔로몬 MMF2 호(국공채)	4), 5)	0	0
6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	4), 5)	0	0
O	권혼합)			
7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0	0
0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-재간접	4), 5)	0	0
8	형)			
9	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	4), 5)	0	0
9	형)			
10	미래에셋글로벌 ESG 사회책임투자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4), 5)	0	-
11	미래에셋글로벌 ESG 사회책임투자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4), 5)	0	-
12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0	0
13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4), 5)	0	0
14	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0	0
15	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0	-
16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	4), 5)	0	0
17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	0	0
18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 G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	0	0
19	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0	0
20	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자투자신탁 2 호(채권혼합)	4), 5)	0	0
21	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0	0
22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	0	0
23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0	-
24	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), 5)	0	0
25	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), 5)	0	0
26	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 K-1 호(주식)	-	-	0
27	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0	0
28	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4), 6)	0	0
20	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소득공제장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	4)	0	0
29	합)			

30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, 6)	0	0
31	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	1), 4), 5)	0	0
32	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0	0
33	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4), 5)	0	0
34	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0	0
35	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0	0
36	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4)	0	0
37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1 호(H)(주식)	6)	0	-
38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	4), 5)	0	0
39	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6)	0	-
40	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4)	0	0
41	미래에셋코스피 2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0	0
42	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, 6)	0	0
43	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4), 5)	0	-
44	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	0	0
45	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4), 5)	0	0

2. 변경 사항:

- 1) 가입자격 변경
- 2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법 개정사항 반영
-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5월 13일 (금)
- 4. 변경 내용:
 - 1) 가입자격 변경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
종류ㅣ	법인세법 시행령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에	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
	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	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
	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	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
	구 (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	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
	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	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
	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	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
	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<u>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u>

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피드며		변경 후		
펀드명	등급	등급	전(%)	후(%)

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 재간접형)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2 2 23.14 미래에셋 5 대그룹대표주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1 1 25.01	8.31
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2 2 23.14	
	1 22.85
미래에셋 KRX3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 2 1 23.8	
미래에셋개인솔로몬 MMF2 호(국공채) 6 6 0.06	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
(기계	7.22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2 2 20.62	2 21.41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-	
대한 대표 전 대표	9.66
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주식혼합-	44.47
제간접형) 3 3 11.34	1 11.47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4 4 6.99	7.39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2 3 15.5	5 14.83
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4 4 9.55	9.67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 2 2 18.7	7 18.52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1 28.69	27.9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 G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2 21.52	2 20.93
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5 2.34	2.14
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자투자신탁 2 호(채권혼합) 5 2.26	2.08
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 1호(주식) 2 2 23.9	7 23.04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3 14.00	5 14.32
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 5 4.65	4.3
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 3 13.15	5 12.07
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 K-1 호(주식) 2 2 19.54	1 19.25
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호(주식) 2 2 18.89	5 19.1
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 4 4 6.55	6.26
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소득공제장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	1471
합) 3 3 14.66	2 14.71
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 4 4 6.89	6.7
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 2 2 21.24	20.44
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 4 4 7.06	7.22
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 5 5 3.51	3.7
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 4 4 9.59	9.61
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 4 4 7.72	7.31
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 1 1 42.15	44.13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 2 2 24.30	5 19.25
미래에셋코리아레버리지 2.0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 1 1 47.6	7 47.54
미래에셋코스피 2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 2 2 23.94	3 23.57
	16.12
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 2 2 16.89	

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	①상장주식	①상장주식
집합투자재산의	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	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
평가방법 (1) 평		<u>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
가방법		
	③장내파생상품	③장내파생상품
	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	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
	이 발표하는 가격	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
		전날의 가격)
	⑦집합투자증권	⑦집합투자증권
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
	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	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
	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	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
	가	가 <u>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</u>
		<u>종시가)</u>

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
자기구의 종류		없음
및 형태		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 의)	<신설>	-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 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 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.

7) 법 개정사항 반영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	-채권	<삭제>
자대상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mark>	
	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mark>	
	<생략>	
제2부 8. 나. 투	-동일종목투자 (예외)	-동일종목투자 (예외)
자제한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
	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	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
	투자할 수 있다.	투자할 수 있다.
	나. 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mark>	나. <삭제>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mark>	
	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</mark>	
	<u>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	
	<u>또는</u> <생략>	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
용지시 등)	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</u>	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
	<u>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	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
	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	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
	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	-채권	<u><삭제></u>
상자산 등)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<생략>	
제17조(운용 및	2. <생략>	2. <생략>
투자 제한)	나.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나. <삭제>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	
	<u>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
제42조(집합투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
자업자 및 신탁	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	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
업자의 변경)	<u>다.</u>	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
		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
		<u>변경할 수 있다.</u>

②~③ <생략>	②~③ <생략>
<u><신설></u>	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
	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
	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	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
	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
	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
	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
	<u>수 있다.</u>

^{*}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㈜